##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13 발의연월일: 2023. 6. 16.

발 의 자:양금희·조명희·이명수

이인선 • 이 용 • 지성호

배준영 · 김미애 · 박대수

정우택・박 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가 되었던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신상 공개가 안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

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 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 법률 제 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의자의"를 각각 "피의자 및 피고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의자가"를 "피의자 및 피고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의자의"를 "피의자 및 피고인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피의자가"를 "피의자 및 피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의자의"를 "피의자 및 피고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의자의"를 "피의자 및 피고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하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얼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의자 및 피고인의 얼굴 등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 <u>피의자의</u> 얼굴 등 공개)	제8조의2( <u>피의자 및 피고인의</u> 얼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굴 등 공개) 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	
정강력범죄사건의 <u>피의자의</u> 얼	
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	피의자 및 피고인의
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u>다만, 공</u>
	개하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얼
	굴은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
	<u>다.</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의자가</u> 그 죄를 범하였다	2. <u>피의자 및 피고인이</u>
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u>피의자</u>	3 <u>피의자</u>
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u>및 피고인의</u>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u>피의자가</u> 「청소년 보호법」	4. <u>피의자 및 피고인이</u>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	
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	②

에	는	피으	]자.	의	인권	을	고려	하
여	신	중하	-게	결?	정하.	고 (	이를	남
용:	하ㅇ	티서는	<u> </u>	나니	된다	7.		

<u><신 설></u>

 <u> 피의자</u>	및 7	피고인의	

③ 제1항에 따른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